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현행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범위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

■ 이견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237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이 건 태 의 원 대 표 발 의 (제 2202237 호)	1
Ⅰ . 제 안 경 위	1
Ⅱ . 제 안 이 유 및 주 요 내 용	1
Ⅲ . 검 토 의 건	2
1. 현 행 광 역 버 스 운 송 사 업 의 범 위 에 수 요 응 답 형 여 객 자 동 차 운 송 사 업 을 추 가 (안 제 7 조 의 3)	2
※ 참 고 자 료	
참 고 「 여 객 자 동 차 법 」 및 시 행 령 개 정 주 요 내 용	7

□ 이견태의원 대표발의(제2202237호)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견태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7. 25.

다. 회 부 일 : 2024. 7.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운영비를 분담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도 대도시권 내에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면서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도 이 법에 따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광역버스의 범위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3. 검토의견

가. 현행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범위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안 제2조제3호)

개정안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범위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3. ----- ----- ----- -----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제3호¹⁾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거나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운행계통²⁾·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임.

2014년 1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 종류로 포함³⁾된 이후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도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음.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② (생략)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종점(終點)과 그 기점·종점 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 3) 2014년 1월 국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노선버스 미운행 지역 등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해 여객 수요에 따라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을 도입하고, 해당 운송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014년 7월 시행 당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운행지역이 농어촌으로 한정되었으나, 2017년 말 농어촌 외 도시 외곽 지역 등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역적 범위를 확대한 바 있음.

현행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운영비를 분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⁴⁾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도 대도시권 내에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더욱이 2023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범위에 ‘대도시권의 같은 권역 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간에 일정한 교통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경

-
- 4) 제10조의2(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운영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한다. 이 경우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시·도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분담률을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도와 관계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그 분담률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분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그 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는 그 부담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10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포함되면서 광역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서비스로 수도권 5개 지역(경기도 시흥시, 광주 시, 화성시, 용인시, 수원시), 13개 노선이 운영중이며, 2024년 7월 기준 총 이용자수는 20,044명으로 월별 이용자 수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임.⁵⁾

< 대도시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서비스 운영현황 >

(단위: 대, 명)

운영 지역	운영 차량수	월별 총 이용자수									
		'23.10	'23.11	'23.12	'24.1	'24.2	'24.3	'24.4	'24.5	'24.6	'24.7
5개 구역	13	3,427	5,067	5,794	7,768	8,783	12,887	15,610	17,235	16,777	20,044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를 재구성

이에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동일하게 대도시권 내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동일한 광역교통 수요를 담당하는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신도시 입주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5) 국토교통부 R&D 과제인 ‘대도시권 수요응답형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22~’25)’ 과제를 통해 광역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인 광역콜버스가 수도권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

다만,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였는데, 광역버스운송사업 노선 확대에 따른 예산 반영 등 관계기관의 행정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토교통부도 광역 수요응답형교통수단(DRT)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 간에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에 기존 광역버스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광역 수요응답형교통수단(DRT)에 대하여 광역버스운송사업과 동일하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에 한정해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으로,

다만, 재정지원 등에 대해서는 기재부 협의 등이 필요하므로 경과규정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82

참고

「여객자동차법」 및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여객자동차법(현행)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규제특례를 받아 운행 등 실증과정을 거친 지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현행)	여객자동차법 시행령(개정, 공포 후 시행)
제2조의2(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립·확정되었으나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교통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 결과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노선버스 및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등 대중교통수단(이하 “대중교통수단”이라 한다)이 인근 지역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환승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환승센터까지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횟수가 부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통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심야시간대에 대중교통수단이 운행되지 않거나 그 접근이 불편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간 및 지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5. 수익성 부족,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기존 노선이 폐지 또는 단축되어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그 접근이 불편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대체할 교통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호 신설>	제2조의2(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 간에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권한의 위임)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제1호의 2 신설>

1의2.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제1호 각 목
 (같은 호 나목 및 차목은 제외한다)의 권한